

수 신 : 정회원사

참 조 :

제 목 :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, 더민주, 재정경제기획위원회, 의안번호 2219825, ' 26. 7. 8)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6. 7.16(목)까지 사무처로 제출(FAX 032-428-7334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□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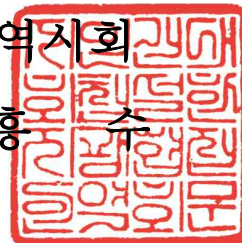
-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*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(안 제22조제2항)
 - * 직접 · 간접 노무비, 재료비, 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
- 도급금액에 현장배치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 계상 의무화(안 제22조의4 신설)

붙 임 1.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
2. 의견 제출양식 1부. 끝.

※ 붙임 문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(incheon.kosca.or.kr) - 협회공문 참조바랍니다.

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

회 장 조 홍 수



담당자 사원 최현탁 과장 김주현 부장 계박사

시행 전건협 인천 제582호(2026. 7.15)

우 21574/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38 4층(구월동, 전문건설회관)/ <http://incheon.kosca.or.kr>

전화 032-428-7331 / 전송 032-428-7334 / 전자우편 qrt9373@kosca.or.kr